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2다295070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 
원고, 상고인 원고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세종  
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3인  
피고,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
외 2인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(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2인)  
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 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. 9. 23.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 
판 결 선 고 2023. 4. 13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판단한다.

### 1.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

신탁법 제63조는 '수익채권의 소멸시효'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"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."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"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."라고 하고 있다.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(신탁법 제33조)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.

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, 이 사건 수익채권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법 제6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.

### 2.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.

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.

### 3. 결론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대법관      김선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박정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노태악

주    심      대법관      오경미